



제305회 정례회  
2011. 12. 20.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○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

정책복지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

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 
**검 토 보 고 서**

**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**

**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**

- 제출일자 : 2011년 11월 9일
- 회부일자 : 2011년 11월 10일

**3. 제안이유**

- 도로명 주소가 확정고시('11. 7. 29.)됨에 따라 현행 자치법규 조례 내의 「지번주소」를 「도로명주소」로 일괄 개정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.

**4. 주요내용**

- 현행 조례상의 「지번 주소」를 「도로명 주소」로 일괄 개정  
-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11개 조례

**5. 검토의견**

**가. 조례 개정의 동기 및 필요성**

- 동 조례안은 종전 주소체계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시행된 「도로명주소등 표기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금년 7월 전국의 도로명주소가 일제 고시됨에 따라 우리 도 각종 조례에 있는 종전의 지번주소를 일괄하여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기 위한 것임

## 나. 세부 내용별 검토 의견

- 주요내용은 충북미래관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11개 조례에 나타나 있는 지번주소를 고시된 「도로명 주소」로 일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